

## 공익침해행위란 무엇일까요?



- ✓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 6대분야 284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 행위

## 공익침해행위엔 어떤 것들이 있나요?

- 건강**  
위해식품 제조·판매, 무면허 의료행위 등
- 안전**  
부실시공, 기준 미준수 안전시설 설치 등
- 환경**  
폐기물 불법매립, 폐수 무단방류 등
- 소비자의 이익**  
원산지 허위표시, 개인정보 무단유출 등
- 공정한 경쟁**  
가격 담합, 불공정 하도급 거래 등
-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**  
거짓 채용광고, 방위산업기술 유출

## 신고서 기재사항



- ✓ 신고자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
- ✓ 부패행위, 공익침해행위 등을 하는 자
- ✓ 부패행위, 공익침해행위 등의 내용
- ✓ 신고의 취지와 이유

※ 공익신고의 경우 비실명 대리 신고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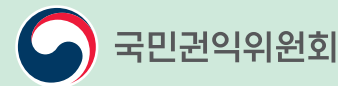
## 비실명 대리신고란 무엇인가요?

- ✓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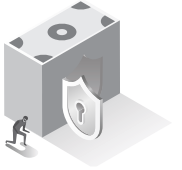


# 세상을 바꾸는 용기 부패·공익신고

1398 110



## 부패행위란 무엇일까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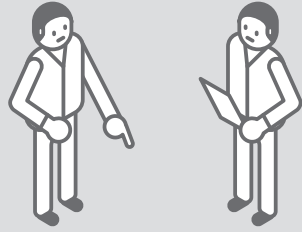


- ✓ 공직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
- ✓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
- ✓ 위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·권고·제외·유인하는 행위

##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?



- ✓ 인터넷  
-청렴포털([www.clean.go.kr](http://www.clean.go.kr))  
-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([www.acrc.go.kr](http://www.acrc.go.kr))
- ✓ 방문 · 우편  
-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(세종)  
-서울종합민원사무소



# 신고자는 어떻게 보호되나요?



##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.

신고자의 동의 없이,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.

위반시 형사처벌



## 신고자는 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누구든지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 등에게 신분상·행정적·경제적 불이익조치하는 것이 금지됩니다.

위반시 형사처벌

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

## 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,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·징계 등의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.



## 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친족 등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## 포상금

신고로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,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추천·심사를 통해 지급

## 보상금

국민권익위원회에 한 부패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지급

내부공익신고자가 한 공익신고로 국가·지방 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지급

## 구조금

신고로 피해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(치료비, 이사비 등) 지급

※ 부패신고는 '19. 10. 17. 이후 신고 부터 적용

# 신고자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?

